

지방세법

[총평] 2017년 6월 17일에 시행한 지방직 지방세법은 일단 출제범위에 있어서는 지방세기본법 4문항, 지방세징수법 2문항, 지방세법 13문항 및 지방세특례한법 1문항으로서 이전 시험에 비해 점점 지방세법의 개별세목과 관련된 규정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방세법에서 출제된 13문항도 취득세 2문제, 나머지 모든 세목에서 각각 1문제 및 특별징수라는 성격구분의 종합문제 1문제로서 전 범위에 걸쳐 고르게 출제되고 있는 바, 이는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는 수험준비가 요구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엽적인 부분까지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형태의 변화라고 판단된다.

출제 문제 중 15문항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중 또는 하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으나, 일부 문제가 박스형 문제로서 제시내용 전체가 정답에 해당하는 등 학생들의 실수를 유발하는 형식으로 출제되었고, 지역자원시설세 및 자동차와 관련된 문항은 일부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엽적인 부분까지 준비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해결하기 힘든 형식의 문제로 출제되었다. 과거의 기출문제에 비해 상당히 난이도가 상승했던 시험으로 보이며, 특정 법률 또는 특정 세목에 치우친 준비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에 고루 신경을 써야하는 힘든 시험의 추세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문제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문 1.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②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된다.
- ④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정답> ④

해설>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문 2. 「지방세법」상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공하는 담배로서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 ②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 ③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 ④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

정답> ③

해설>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미납세반출의 사유로서, 담배소비세의 과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3.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의 동거가족이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④

해설> 제시된 사항 모두가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한다.

문 4. 「지방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령에 따른 수정 신고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① 1년 8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② 1년 3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③ 7개월 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④ 2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①

해설>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는 해당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10%를 감면한다.

문 5.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②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이다.
- ④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는 국세 중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며,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6.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먼저 공제할 수 있다.
- ②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과 동법 제74조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여 조정할 수 없다.
- ④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 ①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 ②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과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둘 중 감면율이 높은 감면 하나만 적용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문 7.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끊은 것은? (단,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 ㄱ. 석탄을 채광(採鑛)하는 자
- ㄴ.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 ㄷ.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 ㄹ.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양수발전을 하는 자
- ㅁ.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ㅁ
- ④ ㄴ, ㄹ, ㅁ

정답> ③

해설> 지하자원 중 석탄과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발전용수 중 양수발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8.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②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도시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 ③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④ 피상속인이 납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해설> 은행업은 대도시필수업종으로서 등록면허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9.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의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 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관리자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 ③ 납입관리자는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및 동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령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④

해설>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서 이는 위탁징수 성격의 특별징수에 해당하므로,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10.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이와 달리 소급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석이나 지침이 공표되어야 한다.
-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 ④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정답> ①

해설>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문 11. 「지방세법」상 지방세의 징수방법으로 특별징수제도가 있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 ㄱ. 취득세
- 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ㄷ. 담배소비세
- ㄹ. 주민세
- ㅁ. 레저세
- ㅂ.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 | |
|-----------|-----------|
| ① ㄱ, ㄴ, ㄷ | ② ㄱ, ㄹ, ㅁ |
| ③ ㄴ, ㄷ, ㅂ | ④ ㄹ, ㅁ, ㅂ |

정답> ③

해설> 등록면허세의 경우는 특허권 및 저작권 등에 대한 특별징수,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수입판매업자의 특별징수, 주행분 자동차세의 경우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관할지방자치단체 장의 특별징수가 적용된다. 지방세 중 특별징수규정이 없는 세목은 취득세, 주민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이에 해당한다.

문 12.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 ②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그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 ④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을 건물분 세액과 토지분 세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 2회 부과한다.

정답> ④

해설>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연 2회 부과한다.

문 13.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 ②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 ③ 압류한 금융재산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 ④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정답> ①

해설>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는 임의적 해제사유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필요적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14.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단, 신고납부하거나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한다)

-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 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경우

- | | |
|------|------|
| ① 3개 | ② 4개 |
| ③ 5개 | ④ 6개 |

정답> ④

해설> 제시된 내용이 모두 수시부과의 사유에 해당한다.

문 15.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중과(重課)하지 아니하는 것은? (단, 취득한 날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공사 등은 없다고 가정한다)

- ①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를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 ② 시가표준액이 4억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실험·실습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 ④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하여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답> ④

해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문 16.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 ④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어서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한 경우 이에 따른 보정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 포함한다.

정답> ②

해설>

- ①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 ④ 보정기간은 불복청구인의 형식적 하자를 자기시정하는 절차이므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문 17.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뮤는 것은?

ㄱ.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 ㄴ.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ㄷ. 기계장비(「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 제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ㄹ.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의 납세의무자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③

해설>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18.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경우 제외)의 납세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자로 하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자로 한다.
- ②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④ 납세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정답> ②

해설>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문 19. 「지방세법」상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그 달에 지급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를 포함한 급여 총액으로 하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 ②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하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의 표준세율은 5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한다.

정답> ①

해설>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급여총액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 급여를 제외한다.

문 20. 「지방세법」상 甲이 다음 사례와 같이 주식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로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과점주주 甲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식 등의 비율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 : %)

사례	구 분	설립 시 주식등의 비율	증가한 주식등의 비율	주식등의 비율 누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식등의 비율
A	법인설립 시 취득	35	—	35	—
	증자 등으로 취득	—	25	60	60
B	법인설립 시 취득	60	—	60	—
	증자 등으로 취득	—	20	80	80
C	법인설립 시 취득	10	—	10	—
	1차 증자 등으로 취득	—	50	60	60
	2차 증자 등으로 취득	—	10	70	10
D	법인설립 시 취득	10	—	10	—
	1차 증자 등으로 취득	—	20	30	—
	2차 증자 등으로 취득	—	35	65	65

- ① A ② B
 ③ C ④ D

정답> ②

해설> 이미 과점주인자가 추가적인 주식취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취득으로 인하여 증가된 지분비율에 대하여만 간주취득 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례에서는 20% 증가된 비율에 대하여만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